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994. 12. 30 보건복지부령 제1호)

장애인 전용시설 및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세부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등의 접근과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한자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고, 동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기존의 시설중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주요공공시설은 이 규칙 시행후 5년 또는 10년 이내에 편의시설 및 설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본고는 지난 2월에 이어 연재되는 것임〉

별표 2 편의시설의 세부설치기준과 대상시설 (제3조 관련)

12. 장애인용 관람석·객석

가) 일반사항

(1)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하는 공연장 또는 관람장은 다음 표에 의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당해공연장 또는 관람장에 설치하는 관람석 수	지체장애인 전용 관람석
500석 이상 1천석 미만	3석 이상
1천석 이상 3천석 미만	5석 이상
3천석 이상 1만석 미만	10석 이상
1만석 이상	15석 이상

(2) 공공도서관에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정도의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 수 있다.

나) 관람석의 설치

(1)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출입구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통행에 편리한 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M, 깊이 1.3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 사용자

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휠체어 사용자용 관람석은 비상시, 출구역할을 하는 통로에 근접하여서 배치하여야 한다.

(5) 관람시설의 비상출입구 옆에는 비상통로를 표시한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난청자용 집단보청장치

(1) 공연장 또는 관람시설에는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器)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3. 장애인용 주차장

가) 일반사항

- (1)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전시시설 및 별표 2의 제6호에서 규정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대상건축물에는 당해 시설의 부설주차장 대수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소수점 이하 단수는 이를 1대로 한다.
- (2)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통행에 편리한 출입구의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주차장 공간

(1) 장애인용 주차장의 크기는 휠체어 사용자가 자동차에 옮겨 타기에 충분하도록 주차대수 1대당 너비 3.3m이상, 길이 5m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길이 6.5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에는 단차가 없어야 하며, 바닥면의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용 주차장의 설치 장소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또는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차장에서 건물까지의 통로에 단차를 없

애고,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유효폭 1.2m 이상의 안전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유도 및 표시

(1)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용 주차장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시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로, 유도신호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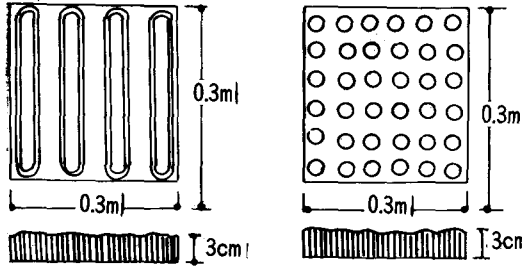
가. 일반사항

- (1) 대피소를 제외한 근린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숙박시설, 전시시설, 교통시설, 공원, 장애인 전용주택의 건물 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물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시각장애인 유도블록은 통행동선의 결절점, 보도상화의 변화지점, 시설의 출입구등에 부설하여야 하며, 기타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3) 대피소를 제외한 근린공공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금융업소, 공원, 전시시설, 교통시설, 장애인 전용주택에는 시각장애인이 해당 시설물의 위치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4)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시·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1) 시각장애인을 유도하기 위한 바닥재료는 유도용 선형블록과 감지용 점형블록을 사용한 다. 이 경우 바닥재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이상의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표면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유도표시용 선형블록

위치표시, 감지,
경고용 점형블록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3)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하여야 한다.

(4) 점형블록은 굴절부, 단차부분, 위험장소의 0.3미터 전면에 부설하여야 한다.

(5) 해당 시설물의 실내 주요 방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각 실 0.3미터 전면에 점형블록을, 그리고 복도폭 2/3이상에 선형유도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다. 돌출폭

(1) 통로 바닥면에서 높이 0.6미터에서 2.0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2) 통로 바닥면에서 높이 0.6미터에서 2.0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3) 통로상부는 바닥면에서 2.0미터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0미터이내에 돌출물이 있을 경우에는 통로 바닥면에서 높이 0.6미터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각 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

(1)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신호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주출입구 위쪽에 설치할 수 있다.

(2)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음향·시간·음색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착용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에만 벨이 울리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3) 시설의 배치가 복잡한 경우에는 출입구 부근에 시설배치를 나타내는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4) 점자안내판 및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사무실 또는 안내소에 연락할 수 있는 인터폰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5) 주요 방의 문열 또는 문손잡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

마. 시·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위급한 상황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통로 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5. 교통시설

가. 일반사항

- (1)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여객취급역·도시철도역사·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항만종합여객시설·자동차정류장·대합실등 교통시설에는 장애인 접근가능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에 시각장애인의 교통시설 이용을 고려하여 저상매표소 및 자동발매기 설치, 개찰구의 너비 넓히기, 승·하차장 위치표시를 하여야 하며, 승강장까지 수평 및 수직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3)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1)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는 단차를 없애고, 계단이 있는 경우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또는 휠체어

리프트 중 1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대합실에서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의 바닥에는 시각장애이용 유도블록을 부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정류장 및 대합실

(1) 별표 2제9호에 의한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대상 정류장 및 대합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 또는 대변기를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정류장 및 대합실에는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한 세면대를 설치할 수 있다.

(3) 구내매점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미터×1.5미터이상의 유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4)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 버스정류장등의 노선안내작동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를 설치할 수 있다.

라. 저상대표소 및 자동발매기

(1) 대표소가 2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1개이상의 저상대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저상대표소의 높이는 1.1미터이하로 하고, 하부에는 휠체어의 무릎 및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미터이상, 깊이 0.45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자동발매기의 현금 투입구의 높이는 0.4미터에서 1.2미터이내로 하고,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선지와 요금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저상대표소와 자동판매기의 전면 0.3미터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개찰구

개찰구중 적어도 1개소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효폭을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개찰구의 형식은 자동개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바. 승강장

(1) 승강장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아니하도록 평탄하게 하고, 기울기는 100분의 1이하로 완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안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0.3미터 내지 0.9미터 범위안에 위험방지를 위하여 감지용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할 우려가 있는 승강장의 경우에는 그 양끝 부분에는 승강장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1미터에서 1.5미터 정도의 추락방지용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유도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장의 보도폭이 넓은 경우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을 병설하고, 좁은 경우는 점형블록만을 설치한다.

(5) 장애인용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3센티미터이내로 하여야 하고,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철도역사의 경우에는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한다.

(6)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단차가 있을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승강하기 쉽게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장애인용 좌석 및 차량

(1) 대중교통수단에는 승강구 부근에 장애인용 지정석을 설치할 수 있다.

(2)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의 바닥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낮출 수 있다.

(3) 휠체어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차량은 휠체어를 탄채 승차할 수 있도록 리프트를 부착하거나 승강장에 별도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4) 철도차량에는 장애인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을 1석이상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용 승차공간 또는 좌석이 설치된 차량은 장애인용 화장실·휠체어지시대 또는 안전벨트를 부착할 수 있다.

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1)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 보도에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2) 음향신호기는 청신호가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청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균일한 신호음을 내어야 한다.

(3) 교통신호기의 청신호 시간은 장애인과 어린이·노약자의 보행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수동식 신호기를 설치할 경우 신호변동 조작장치는 장애인이 조작가능하도록 1.0미터 높이에 동일하게 설치하고, 신호기 0.3미터 전면에 위치 감지용 유도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안내표시

(1) 대중교통수단에는 행선지, 다음 정차역의 이름, 문을 여는 쪽등의 안내방송을 하거나, 전자 문자안내 및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깔과 대조가 되게 하여야 한다.

(3) 긴급피난에 대한 안내는 방송을 하거나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16. 통신시설

가. 일반사항

(1) 장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휠체어 사용자와 기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 이상인 경우와 기술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용 공중전화는 휠체어사용자가 접근이 가능하도록 단차 또는 방해물들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공중전화대

(1) 전화대의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 및 무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65센티미터, 깊이 25센티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동전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의 높이는 0.9미터에서 1.5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3) 장애인용 전화대에는 지팡이 및 클러치 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기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를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4) 필요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시 전화기, 청각장애인용 음량증폭장치,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우체통

(1) 우체통 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에서 1.2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

(2) 우체통은 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할 수 있다.

17. 기타 편의시설

가. 접수대·작업대

(1)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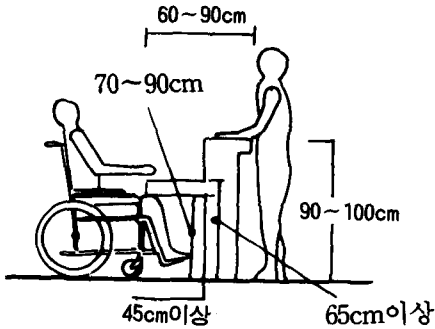
근린공공시설중 읍·면·동사무소·경찰서·우체국·전신전화국·보건(지)소·공공도서관·업무시설중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금융업소등 탁자·접수대·작업대등을 이용할 경우 적어도 하나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접수대·작업대의 하부공간

접수대·작업대등의 하부에는 휠체어의 무릎 및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65센티미터이상, 깊이 45센티미터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접수대·작업대의 높이

접수대·작업대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0.7미터에서 0.9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



(4) 유효바닥 면적

탁자·접수대·작업대의 이용을 위해서는 전면
에 0.7미터×1.2미터이상의 휠체어의 유효바닥 면
적을 확보할 수 있다.

나. 매표소·판매기·음료대

(1) 일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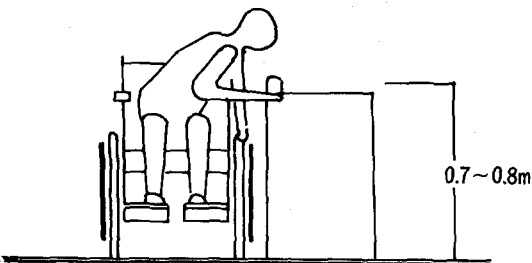
공원, 교통시설에 매표소·판매기·음료대가 있을 경우
적어도 하나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형
태·규격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매표소·판매기·음료대의 높이

(가) 매표소·접수대의 높이는 1.1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공원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판매기
중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동전투입구
·조각버튼 및 출구의 높이는 0.4미터에서 1.2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 식수등 음료대는 휠체어 사용자들이 이용
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분출구의 높
이는 0.7미터에서 0.8미터 정도로 하여야 한다.



(3) 매표소·판매기·음료대의 유효바닥면적 및
표시

(가) 매표소의 매점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미터×1.5미터 이상의 유효 바닥
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음료대의 조작기는 상지장애인들이 사용
하기 쉬운 광감지식·버튼 또는 레버식으로 할 수
있으며,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음료
대 전면에 1.5미터×1.5미터이상의 유효바닥면적
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조각버튼에는 품목·금액등을 점자로 표시
할 수 있다.

18. 안내표시

가. 일반사항

(1)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
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이 옥내·옥외에서 각종 시설물을 잘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표식이 정해진
형태·규격대로 필요한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
또는 설치되어야 한다.

나. 안내표지 설치기준

(1) 장애인의 편의시설 안내표시의 색채는 청
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이 10센티미터에서
45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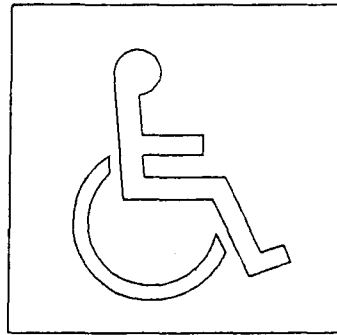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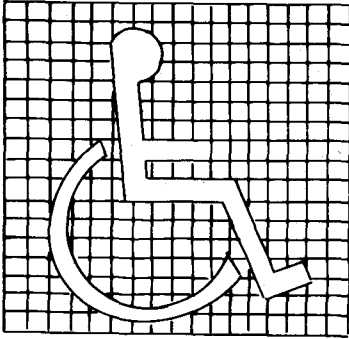
(3) 장애인의 편의시설 안내표지는 식별이 용
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원칙적
으로 일반 안내표지와 동일한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4)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
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
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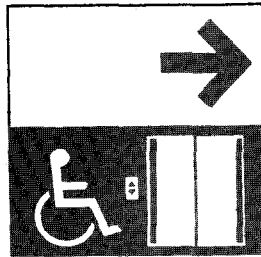
다. 작도법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표지는 다음기준에 의하
여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구역에 설치되는
안내표지는 도로표지규칙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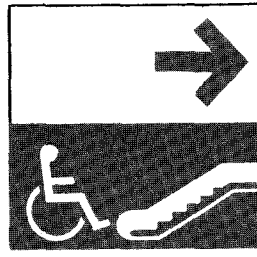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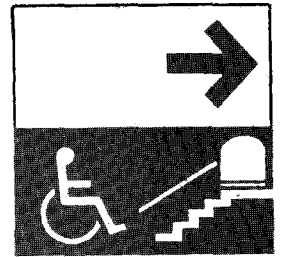
경사로



승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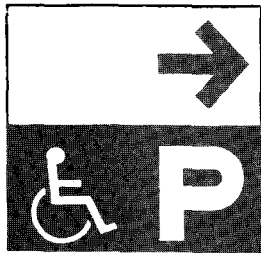
에스컬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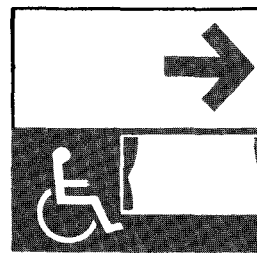
휠체어리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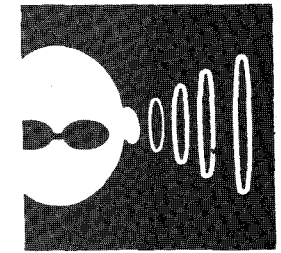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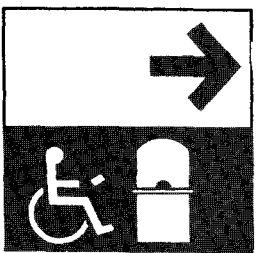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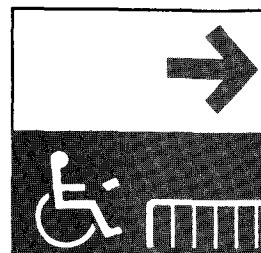
관람석



음향신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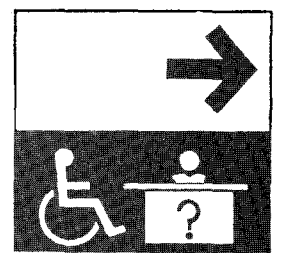
매표소



개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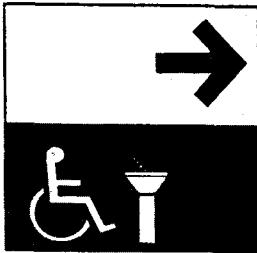


공중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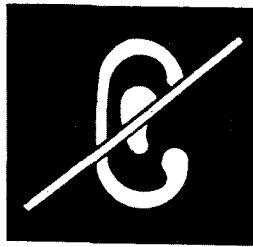


안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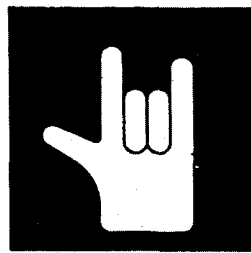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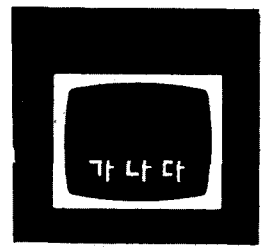
식수대



청각장애인용



수화가능



자막방송

※ 비고 : 동표중 “...할 수 있다”는 권장사항으로 설치대상시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3]

정비대상시설 및 기한(부칙 제2항관련)

정비대상시설	정비기한	
	이 규칙시행 후 5년 이내	이 규칙시행 후 10년 이내
횡단보도	○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	
5개 이상의 대변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	
노유자시설중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	
종합병원	○	
장애인특수학교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무역항에 설치된 항만종합시설	○	
철도역사(통일호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한다), 도시철도역사		○